

하도급 계약자에 대한 지불 안전보장



Security of payment for sub-contractors (Korean)

일부 하도급 계약자들은 오랫동안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귀하가 NSW 건축 및 건설 산업에서 하도급 계약자로 일하며 오랫동안 지불 받지 못한 경우,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건축 및 건설 산업 지불 안전보장법 (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)은 지불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.

운영 방법

- 1) 하도급 계약자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될 경우,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하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판관에게 클레임을 접수시키면 됩니다. 재판관은 누가 지불을 받아야 하며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.
 - a. 하도급 계약자는 'claimant' 라고 합니다.
 - b.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계약자는 'respondent' 라고 합니다.
- 2) 그 후 귀하는 **지불 보류 요청 (payment withholding request)**이라고 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**주 계약자**에게 송달합니다. 이는 **respondent**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입니다.
- 3) 주 계약자는 재판 과정이 완결된 후에 **respondent**에게 지불을 하도록 허용이 됩니다.
- 4) 재판관은 이후 귀하가 지불을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합니다.

주요 정보

- Security of Payment Act는 상업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됩니다. 귀하는 다른 계약자 혹은 주 계약자에 대해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사적인 주택소유자로부터 지불을 받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

- 누군가의 집에서 일한 것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귀하의 법률 조연자, 노동조합 혹은 지역사회의 누군가에게 알려주세요.
- 하도급 계약자는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지불만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.
- '주계약자'는 귀하에게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. 주계약자는 단지 respondent에게 지불이 멈추도록 할 수만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정보

법률, 재정 혹은 전문 조언

하도급 계약자는 법률 조연자들, 노동조합 혹은 대변자와 이 사안에 대해 상의할 것이 권장됩니다.

지불 보류 요청서 (Payment withholding request form)

재판 신청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자는 지불 보류 요청서 및 서명된 법정 진술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.

독립된 재판

Security of Payment Act 하에서의 절차 지불을 결정할 책임은 독립된 재판관에게 있으며 이 재판관은 지정된 지명 인가 당국 (Authorised Nominating Authorities)입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

www.services.nsw.gov.au/securityofpayment를 방문하시거나 1800 679 289로 전화하십시오.

언어 지원을 위해서는 번역통역 서비스 (TIS)에 13 14 50으로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오.

면제조항: 이 간행물은 법률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.